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3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우리투자증권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우리투자증권㈜에 대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한 '적합성원칙 위반', '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'으로 과태료 80백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면제*

*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면제

○ **(수정심의)**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('21.5.26. 금융위 의결)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('21.3.25. ~ 9.24.) 중 발생한 위반건은 비조치하기로 심의하였으며, '적합성원칙 위반'과 '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' 관련 위반 건이 모두 계도기간 중 발생하였기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전액 면제

제재대상	금전제재	
	원안	수정안
우리투자증권㈜	과태료 80백만원 부과 과징금 부과 면제	과태료 부과 면제 과징금 부과 면제